

제819호

무주 공보

2026. 7. 22.(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 2026년 무주군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지정(안) 행정예고 공고..... 14

◆ 무주군 공고 제2026-801호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무주군수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 조성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 목재친화센터 기능 및 시설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체험료·이용료 면제 및 감경 사항(안 제9조, 제10조)

다. 목재친화센터 민간위탁 사항(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
- 전자우편 : youbi21@korea.kr
- 팩 스 : 063-320-2269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산림녹지과(전화 : 063-320-24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건 서

- 조례명 :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친화적 목재문화의 생활화와 탄소중립적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목재친화센터(이하 “목재친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목재친화센터는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48-1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목재친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목재교육 및 목공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3. 목재문화 활성화 및 탄소중립 참여 확산을 위한 목재문화행사
4. 목재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
5. 목재 및 목재이용제품의 전시 및 제작·판매
6. 지역특산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
7. 그 밖에 목재이용 및 목재체험에 관한 활동

제4조(시설) 목재친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 목공체험장(다목적 강의실), 목재실내놀이터
2. 회의실 등 목재친화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제5조(휴관일) ① 목재친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목재친화센터 게시판 및 무주군 누리집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목재친화센터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목공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실비(實費) 범위에서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 절차) ① 목재친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목적 강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이

용 전달까지 군수(제13조에 따라 목재친화센터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체험료를 별표 1의 단체 체험료로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체험료 및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목재친화센터의 사정(점검, 보수, 운영상 필요 등)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체험 또는 이용 시작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자가 체험 또는 이용이 시작된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장 거부 또는 퇴장 명령을 받아 체험

또는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목재친화센터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장 거부 및 퇴장은 각 호의 행위가 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목재친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재친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운영방법) ① 목재친화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목재친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4조(부대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수행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카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강사) ① 군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공체험 프로그램 체험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작품 1점당)

구분	체험시간	체험료		비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상급 (기계작업)	3시간 기준	3,000	2,000	체험시간 경과 시 체험료의 50% 추가 부담
중급 (공구작업)	3시간 기준	2,000	1,500	
초급 (단순작업)	3시간 기준	1,000	500	

*재료비는 초급·중급·상급과정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별도 부과

[비고]

1. 정규프로그램 외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은 운영 여건에 따라 운영 내용,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3. 체험 참가자를 인솔하는 사람(부모를 포함한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음
4. 체험장 내에서의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금지함
5. 별표 3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게는 개인 체험료 대신 단체 체험료를 적용함

[별표 2]

목재친화센터 시설 이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다목적 강의실 (1실)	4시간	50,000	목공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경우 목공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적용
	1일(8시간)	80,000	
목재실내놀이터 (1인)	10:00~11:30 13:30~15:00 15:30~17:00	회당 5,000 (보호자 1,000)	1일 3회, 1회당 90분

[비고]

- 다목적 강의실의 이용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이용료를 적용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10,000원의 추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다목적 강의실 이용료 감경 기준
 - 5일 이상 이용: 20퍼센트 감경
 - 10일 이상 이용: 30퍼센트 감경
 - 20일 이상 이용: 50퍼센트 감경
- 목재실내놀이터의 이용료 감경 기준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 1,000원 감경
 - 20인 이상 단체: 1,000원 감경
- 다목적 강의실은 목재관련 교육, 문화행사 및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함

[별표 3]

목공체험 프로그램 감경 대상자(제10조제1항 관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무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
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7.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무주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별지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이용 시설	
	다목적 강의실	
	이용인원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목재친화센터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무주군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 귀하

2026년 무주군 물놀이 관리지역 · 위험구역 지정 (안) 행정예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및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하여 2026년 무주군 물놀이 관리지역 · 위험구역을 지정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 및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07월 22일

무 주 군 수

1. 고시명: 2026년 무주군 물놀이 관리지역 · 위험구역 지정(안) 행정예고

2. 관련근거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벌칙)
-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 지정목적: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4. 지정기준

- 가.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지역
- 나. 물놀이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하여 평수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 지역
-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5. 주요내용

가.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현황 【붙임 1 참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연번	세부지명	유형	위치	
			읍면	리
1	후도지구	관리지역·위험구역	무주읍	내도리 2043-3번지 후도교
2	서면지구	위험구역	무주읍	대차리 1584-22번지 일원
3	용포지구	위험구역	무주읍	용포리 497-4번지 일원
4	지전지구	관리지역·위험구역	설천면	길산리 106번지 일원
5	구천동지구	위험구역	설천면	심곡리 산53-6번지일원
6	라제통문	위험구역	설천면	설천면 라제펜션 뒤
7	통안지구	위험구역	안성면	공정리 1223-5번지 일원
8	하굴지구	관리지역·위험구역	부남면	굴암리144-1번지 일원
9	대티지구	위험구역	부남면	대유리 39번지 대티교 밑
10	도소지구	위험구역	부남면	대소리 1593 (대소리 1593-84, 1560)
11	덤덜지구	위험구역	부남면	대소리 1593 (대소리 524-2)
12	대소지구	위험구역	부남면	대소리 1593 (대소리 484)

나. 운영기간: 2026. 08. 2. ~ 08. 31. (30일간)

다.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서 제한되는 사항

1) 물놀이 관리지역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지도행위에 따라야 함
-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입수하여야 함
- 음주 수영, 다이빙 등 위험행위 금지
- 폭포, 절벽 등 낙상 및 추락위험 장소 접근제한
- 기타 위험행위 금지

2) 물놀이 위험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금지사항

-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출입 금지

- 위험구역 표시 및 안내시설 훼손 금지
-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공무원 및 안전관리요원의 퇴거 지시·출입 통제 등 명령에 따라야 함
- 위반시 조치사항

위 사항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7. 22. ~ 2026. 8. 1.(10일간)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8. 1.(토)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팩스(fax 063-320-2489), 방문접수(무주군청 안전재난과)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문의

가. 문의처: ☎ 063-320-2266(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 붙임 1. 2026년 무주군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붙임 1】

□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현황

무주읍 서면마을: 위험구역



무주읍 용포교: 위험구역



무주읍 후도교(노란색: 관리지역, 빨간색: 위험구역)



설천면 지전마을(노란색: 관리지역, 빨간색: 위험구역)



설천면 라제통문: 위험구역



설천면 세심대: 위험구역



안성면 통안지구: 위험구역



부남면 감동교 밑: 위험구역



부남면 덩덜교: 위험구역



부남면 대소교: 위험구역



부남면 대티교: 위험구역



부남면 하굴암지구(노란색: 관리지역, 빨간색: 위험구역)



【붙임 2: 관련법령(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9. 12. 3., 2020. 6. 9., 2023. 12. 26., 2024. 3. 19.>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6. 8.]

제8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7., 2020. 6. 9.>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전문개정 2010. 6. 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 6.> [전문개정 2010. 8. 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6. 18.>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태 료 금 액 (단 위: 만 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 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붙임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2026년 무주군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안)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7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